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경유)

제목 2024년 부동산투자회사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분 통지((주)코람코자산신탁)

1.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1515(2025.5.16.)호의 관련입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등에 따른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임1과 같이 행정처분 하오니, 이행결과 보고서(불임2)에 따른 조치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10일 이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같은 위법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재발방지확인서(불임3) 서명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사항(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재발방지확인서)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추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보고 및 제출방법 : 리츠정보시스템 → 검사/감독 → 위반사항 → 조치결과
4. 아울러, 해당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행정처분 내용.
2. 이행결과 보고서(작성양식).
3. 재발방지확인서. 끝.



국토교통부장관

협조자

시행 부동산투자제도과-2709 (2025. 9. 23.)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 / <http://www.molit.go.kr>
과

전화번호 044-201-4812 팩스번호 044-201-5538 / jeongmin89@molit.go.kr / 비공개(5,7)

소중한 개인정보 함께 지켜요!

(주)코람코자산신탁 (재발방지등 조치 2건)

자산관리 회사	위반회사	위반사항		처분사항(안)	
		위반내용	근거규정	조치종류 및 조치내용	근거규정
■ 법인명 :(주)코람 코자산신탁 / ■ 주소 : 서울특별 시 영등포 구 국제금 융로 8길 31, 15층 (여의도동, SK증권빌 딩)	(주)코람코자 산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에 관한 사항 - (주)코람코자산신탁은 (주)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의 변경(2024.10.04.)이 있었으나, 기한 내 공시하지 않았음(공시일 : 2024.10.18.) 	<p>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제4호, 제4항제3호</p> <p>법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 제6항</p> <p>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제2항제4호, 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등 조치 - 향후 동일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확인서를 제출할 것 	<p>부동산투자회사법제39조제2항</p> <p>법시행령 제41조제4항</p>
	(주)코람코자 산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변경 보고에 관한 사항 - (주)코람코자산신탁은 (주)코람코지속성장오피스제1의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 변경(2024.06.14.)이 있었으나,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았음(보고일 : 2024.07.02.) 	<p>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제2항제2호</p> <p>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제1항제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등 조치 - 향후 동일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확인서를 제출할 것 	<p>부동산투자회사법제39조제2항</p> <p>법시행령 제41조제4항</p>